

『구미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결정(변경)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 이유

시민의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지형을 최대 이용한 계획 조경 식재로 인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유도하고, 고용증대 창출과 소득향상 및 세수증대에 기여는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 수요를 충족하여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함

3. 주요내용

- 위 치: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산81-3번지 일원
- 변경내용
 - 당 초 : 관리지역 (182,602m²), 농림지역 (1,002,461m²)
 - 변 경 : 계획관리지역 (1,185,063m²)
- 세부변경내용

구 분	2월 의회 의견제시	4월 의회 수정의견제시	비 고
관 리 지 역	226,384 m ²	182,602 m ²	감 43,782 m ²
농 립 지 역	1,061,906 m ²	1,002,461 m ²	감 59,445 m ²
계획관리지역	1,288,290 m ²	1,185,063 m ²	감 103,227 m ²

※ 금회 수정의견 제시는 자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계획으로 변경함.

- 증감사항
 - 관 리 지 역 감 182,602 m²
 - 농 림 지 역 감 1,002,461 m²
 - 계획관리지역 증 1,185,063 m²
- 사업기간 : 2006년 ~ 2008년

4. 참고사항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- 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

5. 검토의견

- 장천면 상림리 산 81-3번지 일원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골프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
- 제 111회 임시회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채택한 건으로서 자연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정 보완되었음
- 따라서 수출 300억불 시대를 여는 정주환경 개선 계획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의 여가선용 공간 확보 및 세수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.